



2026 년 9 월 3 일

수 신 : 태광산업(주) 이사회 및 이사 각위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0(장충동 2 가)

참 조 : 태광산업(주) 감사위원회, ESG 지원팀

발 신 :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제 목 : 이른바 "그룹 경영협의회"에 관한 사실확인 질의 및 조치 요구

태광산업 이사회에 드리는 주주서한

귀사 및 귀 이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광산업 이사회 구성원 여러분. 귀사의 2 대주주 트러스톤 - OK 캐피탈의 대표자 트러스톤자산운용입니다.

당사는 지난 8 월 13 일 귀사 경영진과 독립이사회로부터 각각 회신을 받았습니다. 배당·자사주·유동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답변과, 특히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전체 주주의 공동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경영진의 공언,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단순히 추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독립이사회의 다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그 공언과 다짐을 신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뢰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귀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실제로 귀사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결정은 이사회 바깥에서 내려지고 이사회는 이를 추인할 뿐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 약속도, 어떻게 심의하겠다는 다짐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서한은 태광그룹의 이른바 "경영협의회"(그룹 스스로는 "경영지원협의체"로도 칭하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조율 기구 일체를 통칭합니다. 이하 "경영협의회")와 귀사의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사회 명의의 회신을 본 서한 수령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줄 것을 요구하며, 제 6 항의 질의 중 열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명의의 회신을 함께 요구합니다.

1. 귀사의 의사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묻습니다.

복수의 언론 보도와 수사·재판 기록에 따르면, 태광그룹에는 계열사 대표들이 매달 모여 그룹의 주요 경영사안을 논의하는 경영협의회가 늦어도 2014 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협의회는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산하에 전략실과 홍보실, 그리고 산업과 금융의 M&A 를 각각 전담하는 경영진단 1 실·2 실을 두고 약 2 조 5 천억원 규모의 인수합병을 총괄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그룹 경영을 총괄해 온 인물의 직함을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으로 기재하고 있고, 귀사의 전 대표이사가 협의회 부의장을 겸직한 사실도 그룹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는 귀사의 정관,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법인격이 없고, 설치 근거가 공개된 바 없으며, 심지어 명칭조차 자료마다 다릅니다. 전 대표이사의 협의회 부의장 겸직 사실조차 귀사의 사업보고서 임원

현황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유명과도 같은 기구가, 법적·공시 체계 바깥에서 **귀사의 장래**를 좌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언론 보도를 겹쳐 보면 문제는 더 뚜렷해집니다. 언론은 귀사의 미등기·비상근 고문인 이호진 전 회장이 이 협의회에 주기적으로 출근하고 있으며, 최근의 대규모 인수합병 역시 "그룹 컨트롤타워 격인 경영지원협의체에서 이 전 회장이 결정했을 것"이라는 그룹 관계자의 언급을 보도하였습니다. 고문 계약상 직무가 "경영자문"에 그치는 인사가 그룹 의사결정 기구에 상시 관여하고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면, 이는 당사가 2025 년 3 월 서한에서 지적한 "고문 계약을 통한 사실상의 경영관여와 이사회 패싱"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2. 경영협의회 체제는 이미 귀사에 현실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지배구조 논쟁이 아닙니다. 당사가 협의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 체제가 이미 귀사와 계열사에 구체적인 손해를 반복하여 입혀 왔기 때문입니다.

첫째, 귀사는 2025 년 7 월 30 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벌점 6 점과 제재금 7,600 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귀사의 1 조 5 천억원 규모 신사업 계획과 교환사채 발행 중단이라는 중대한 경영정보가, 귀사 이사회의 승인도 공시도 거치지 않은 채 **"태광그룹 홍보실" 명의의 보도자료**로 먼저 발표된 것이 그 사유였습니다. 태광산업의 장래 사업과 경영계획을 발표한 주체가 귀사의 대표이사도, 회사 자체도 아닌 법인격 없는 "태광그룹"이었다는 사실은, 의사결정의 소재가 어디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사는 2025 년 8 월 11 일 감사위원회에 이 사건의 경위와 책임 규명, 손해배상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으나, 1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의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은 2025년 1월 정기검사 결과 흥국생명에 대해 경영유의 등 48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하면서, 흥국생명이 충분한 검토 없이 그룹의 요청에 따라 경영협의회에 인력과 비용을 지원해 온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인격 없는 기구의 운영비용을 계열사가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를 금융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같은 질문이 귀사에도 성립합니다. 귀사가 협의회에 인력·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협의회가 귀사의 경영사안을 다룰 근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셋째, 계열 저축은행 두 곳은 고객 동의 없이 경영협의회에 "법률 검토, 경영현황 보고" 명목으로 고객 신용정보 총 148건을 제공하였다가 합계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지난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은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협의회로의 정보 집중 관행이 계열사에 20억원의 실손해로 돌아온 것입니다. 귀사의 각종 기밀 자료 역시 같은 경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협의회 의장으로서 그룹 경영을 총괄하였던 인물은 골프장 상품권 배임과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150억원 부당대출 지시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호진 고문 역시 계열사를 동원한 38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귀사는 2026년 5월 13일 이를 혐의발생 공시하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법정에서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그룹 경영을 총괄한 전 의장은 "모든 사안이 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른 것"이라 하고, 회사 측은 "전 의장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 합니다.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투고 있으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경영협의회가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횡령·배임행위를 지시할 실질적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며 대표이사들은 이를 문제의식 없이 수행하였다는 것입니다.

3. 귀사가 스스로 밝힌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귀사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귀사는 8 월 13 일자 회신에서, 티시스의 부동산 시행사 대여금 1,800 억원에 관하여 "티시스는 당사가 4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당사의 종속회사는 아니며, 귀사가 언급한 1,800 억원의 대여는 당사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집행된 거래가 아니라, **별도 법인인 티시스의 자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라고 답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답변에 담긴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계열관계에 있더라도 별도 법인의 거래는 그 법인의 자체 의사결정에 따른다는 것, 바로 법인격 독립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원칙에 따라 다음의 결론 또한 자명합니다. **별도 법인인 태광산업의 의사결정은 오로지 태광산업의 이사회만이 할 수 있으며, 그룹 차원의 어떤 협의체도 이를 대신하거나 선결할 수 없습니다.** 티시스에 대하여는 성립하는 원칙이 어찌서 귀사 자신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않습니까. 귀사가 티시스에 대하여 주장한 원칙을 귀사 자신에 대하여 부정한다면, 그 원칙은 책임을 회피할 때만 꺼내 드는 방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집단의 공동목표에 따른 공동이익의 추구가 사실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라도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의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 도 12633 판결).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이 이사회에 결의사항이라는 점(상법 제 393 조 제 1 항)과, 2025 년 7 월 개정 상법이 이사회에

기업집단이 아닌 회사 및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를 명문으로 부과하였다는 점(제 382 조의 3)은 여러분께서 이미 회신에서 확인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4. 경영협의회의 개입과 이를 방치하는 이사회에는 각각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 서한 역시 경영협의회에 보고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바, 경영협의회에 전합니다. 법적인 실체가 없는 귀 조직이 지위와 권세만으로 상장회사 이사회를 형해화하고, 산하조직(태광그룹 홍보실)을 통하여 권한 없이 상장회사 업무를 하여 손해를 입혔습니다.

지위와 권세만으로 상장회사 이사회를 형해화하는 귀 조직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이 포함된다는 판례(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 도 7446 판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회사의 경영계획을 대외에 확정 발표한 2025 년 7 월의 행위는, 감독 업무 수행자의 부지를 이용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 도 10629 판결)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사는 경영협의회에 의한 관여의 중단을 요구하며, 중단되지 않는다면 형사적 평가를 구하는 방안까지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귀 이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 2 항에서 열거하였듯 협의회 체제는 벌점과 제재금, 과징금과 손실, 그리고 기소로 이어지며 귀사와 계열사에 현실의 손해를 반복하여 입혀 왔습니다. 실손해를 끼치는 외부 개입을 알면서도 견제하지 않는 것은, 당사가 2025 년 8 월 4 일자 서한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감시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 다 222368 판결).

당사는 견제에 따르는 부담을 모르지 않습니다. 2025 년 3 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귀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재선임을 추천한 남유선 당시 감사위원장이 최대주주 측의 반대로 재선임되지 못하였고, 그 전례를 지켜본 이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의 가능성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사를 누르는 압박의 존재야말로 위에서 말한 위력 평가의 근거이고, 압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침묵은 여러분을 압박의 피해자가 아니라 방치의 당사자로 만들 뿐입니다.

5. 그룹 협의체에 대한 우리 재계의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그룹 컨트롤타워가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는 삼성이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은 2017 년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며 "모든 책임이 미래전략실에 있음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2025 년 그 기능을 되살릴 때는 임의기구가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법인 안의 정식 직제로 만들어 임원이 상법상 책임을 지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SK 수펙스추구협의회는 "개별 기업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는 역할만 담당한다"고 스스로를 한정하고 있으며, 롯데 역시 각 계열사 중심의 책임경영과 독립경영을 강조하며 사업군 HQ 체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룹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지주회사라는 법적 그릇에 담거나, 특정 법인의 정식 직제로 편성하거나, 최소한 결정권이 각사 이사회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못박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재계의 표준입니다.

6. 이사회에 다음 열 가지를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당사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면, 아래 질의에 답하는 것만으로 시장의 의구심은 해소될 것입니다. 귀 이사회가 협의회가 짜놓은 결정에 도장만 찍는 자리가 아님을 회신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영협의회의 정확한 명칭과 설치 근거(계열사 간 협약, 운영규정, 계약 등 일체의 문서)가 무엇인지를 질의하며, 그 문서를 주주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협의회의 현재 의장·부의장·구성원 명단과 각자의 소속·보수 부담 주체, 그리고 산하 조직(전략실, 경영진단 1 실·2 실, 홍보실, 지원단 등)의 편제와 인원을 밝혀 주십시오.
3. 이호진 고문이 협의회에 참석 또는 출근하는지, 참석한다면 어떤 안전을 보고받고 어떤 의견을 내는지, 그리고 2024 년 11 월 체결된 경영자문계약상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질의하며, 계약서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4. 귀사가 협의회에 지원하는 인력(과건·겸직), 비용, 사무공간 등의 내역과 각각에 대한 이사회 승인 또는 계약상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이 흥국생명에 지적한 것과 동일한 쟁점입니다.
5. 최근 3 년간 귀사 이사회에 부의된 안전 중 협의회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사전에 검토·조율한 안전이 무엇인지를 질의합니다. 특히 애경산업·동성제약·케이조선·호텔 인수, 교환사채 발행, 기업가치 제고계획, 자기주식 활용 방침이 이사회 심의 전에 협의회에서 다루어진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6. 귀사의 미공개 중요정보와 경영현황 자료가 협의회에 제공되는지, 제공된다면 그 법적 근거(비밀유지계약, 이사회 승인 등)와 정보관리 통제장치가 무엇인지를 질의합니다.
7. 귀사의 대표이사·임원 인선에 협의회가 관여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023 년 12 월 "태광그룹" 명의로 귀사 대표이사 선임이 포함된 그룹 임원인사가 일괄 발표된 경위와, 당시 귀사 이사회 심의와의 선후관계를 함께 밝혀 주십시오.
8. 협의회 또는 이호진 고문이 선결하거나 조율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개별 이사가 이견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이견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그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시사되는 등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질의합니다. 이에 답하는 것은 제 4 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9. 협의회와 관련하여 상법 제 393 조, 제 382 조의 3, 제 401 조의 2 및 형법 제 314 조 위반 리스크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법률검토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질의합니다.
10.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의) 2025 년 7 월 1 일 및 7 월 2 일 "태광그룹 홍보실" 명의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주체와 결재 라인이 어디인지, 그것이 당시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공시된 것인지, 경영협의회 산하 홍보실과 동일한 조직인지를 질의합니다. 또한 당사의 2025 년 8 월 11 일자 감사촉구 서한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제재금 7,600 만원의 손해에 대한 구상 또는 배상 조치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7.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다음 다섯 가지 조치를 요구합니다.

1. 협의회의 실체(설치 근거, 구성, 비용부담)를 사업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고, 귀사의 인력·비용 지원이 있다면 이를 중단하거나 적절한 계약과 이사회 승인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2. 이사회는 부의 안전에 대하여 경영진이 사전에 협의회, 이호진 고문 등 회사 외부의 조직·인사와 의견교환·협의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과 내용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록하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이호진 고문의 지위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영에 관여하려면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다면 협의회 참석을 포함한 일체의 경영관여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사가 2025 년 3 월 서한에서 밝힌 책임경영 요구의 연장선입니다.
4. 감사위원회가 협의회에 대한 회사의 자원·정보 제공 내역과 협의회를 경유한 의사결정의 존재 여부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상법 제 412 조).
5. 귀사가 회신에서 약속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수립 주체가 협의회 경영진단실이 아니라 귀사 이사회임을 확인하고, 2027 년 정기주주총회 상정 전에 구체적 내용을 공시하고 주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합니다.

8. 신뢰는 의사결정의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당사는 귀사의 경영진 및 독립이사회가 8 월 13 일 회신에서 보여준 변화의 신호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심의하고 이행할 주체가 온전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약속은 언제든 이사회 바깥의 결정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연초까지 이사회에서 기업가치 제고방침을 심의하다 갑작스레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2025 년의 교환사채 사태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만일 귀사가 회신을 거부하거나 형식적인 답변에 그친다면, 당사는 협의회와 귀사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감사위원회에 대한 재차의 감사 청구, 책임 있는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등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입니다. 귀사와 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성실한 회신을 기대합니다.

트리스톤자산운용

